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2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뉴스 구독 일상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 등을 공표하는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및 영업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매체를 일반일간신문에서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안 제28조제1항)

나. 수사기관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사실을 행정기관(시·도지사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을 “일반일간신문(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재하되 일반일간신문의 경우에는 당일 인쇄·보급되는 신문 전체에”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사기관의 고발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 ----- ----- ----- ----- ----- ----- ----- ----- <u>일반일간신문(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재하되 일반일간신문의 경우에는 당일 인쇄·보급되는 신문 전체에</u> ----- ----- ----- ----- ----- <u>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u> ----- ----- -----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
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
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
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
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④ ~ ⑤ (생략)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기관의 인터넷 -----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
과 같음)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고 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3259